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17 발의연월일: 2020. 10. 28.

발 의 자:김병욱·안민석·유동수

전재수・김정호・이규민

민형배 • 김민기 • 홍성국

박 정・최인호・김교홍

이상헌 의원(13인)

제안이유

전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기술혁신이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으며, 금융산업역시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이에 세계 각국은 핀테크 및 디지털 금융 육성을 위해 과감한 투자와 함께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바, 한국 역시 금융규제샌드박스 운영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시행('19. 4. 1.)하였으며, 현재까지 115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가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금융 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전성이 입증되더라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2+2년) 내에 법령 정 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혁신금융서비스 운영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 지연 시에도 법령 정비 시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하여 그 성과를 입증한 경우 특례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규제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 정비를 금융위원회 및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제5항).
- 나. 혁신금융사업자의 법령 정비 요청에 따른 법령 정비 필요성 판단절차 및 요건 등을 구체화함(안 제10조제5항부터 제12항까지).
- 다. 법령 정비가 결정된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정비가 마무리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10조제11항).

법률 제 호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1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혁신금 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 연장 사유를 소명하 는 서면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신 청하여야 한다.
- ⑤ 혁신금융사업자(제1항에 따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지정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소명하는서면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하여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례가 인정되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내용을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지정기간의 만료일 이전까지 법령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법령 정비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등을 바탕으로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 ⑧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였으나,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를 중단할 수 있다.이 경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정비가 중단된 날부터 3개월이되는 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제9조를 준용한다.
- ⑨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요청 또는 제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 ①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검토결과(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중단한 경우 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제10항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령 정비에 착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 한정한다)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허가 등과 관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이 정비되어 인·허가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으로한다. 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체 없이 인·허가 등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한 경우
- 2. 제1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인ㆍ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제7항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제9항에 따

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완료되어 시행된 날(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 인·허가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혁신금융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지정기간의 연장 및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제4항 중 "제10조"를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0조제11항에 따라 지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혁신금융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제5호 중 "제4항 또는 제5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8조제6항"을 "제18조제7항"으 로 한다.

별표 제2호 및 제31호를 삭제하고, 제4호의2 및 제2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안 혅 행 개 정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금 제10조(지정기간의 연장) ① 혁 신금융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 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지 스의 지정기간을 연장할 필요 정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가 있는 경우 그 만료일로부터 경우 그 지정기간을 한 차례만 3개월 이전에 연장사유를 소명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금융위 수 있다. 원회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지정 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혁신금융서비 스 지정기간을 연장받으려는 혁신금융사업자는 지정기간 만 료일부터 3개월 전까지 연장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 및 혁신 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 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③ 제2항----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혁신금 융심사위원회는 지정기간의 만 료일 이전에 연장 여부에 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금융 위원회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 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

여 연장 신청을 한 혁신금융사 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다.

- ③ 제2항에 따른 지정기간의 4 제3항-----연장 여부는 다음 각 호를 고 려하여 심사한다.
- 1. ~ 4. (생 략)
- ④ 제1항에 따른 연장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가능하다. <신 설>

<신 설>

<신 설>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 ⑤ 혁신금융사업자(제1항에 따 라 지정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지정기간 만료 3 개월 전까지 법령 정비의 필요 성을 소명하는 서면 및 혁신금 융서비스 운영 결과를 첨부하 여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라 특 례가 인정되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를 금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관이 있는 경우, 그 요청 내용을 관 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 ⑦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 기관의 장은 지정기간의 만료

<신 설>

일 이전까지 법령 정비 필요성 등에 대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법령 정비의 필요성 및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결과등을 바탕으로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의 안정성이나 금융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⑧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하였으나, 법령 정비의 필요성이었어진 경우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령 정비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정비가중단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만료되는 것으로 보며, 제9조를 준용한다.

⑨ 금융위원회는 관련 행정기

<신 설>

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 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 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 회"라 한다)에 규제정비를 요 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 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금융 관련법령의 정비 요청 또는 제 출된 의견을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① 금융위원회 또는 관련 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른 검토결과(제8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중단한 경우그 결과)를 제5항에 따라 요청한 혁신금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1항 및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른 요청을 한 혁신금융사업자(제10항에 따라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하였다는 통보를받은 혁신금융사업자에 한정한

다)는 금융관련법령의 정비가 완료되어 시행될 때까지의 기 간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 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허가 등과 관 련이 있는 금융관련법령이 정 비되어 인·허가 등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인·허가 등을 받 을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혁신금융사업자는 지 체 없이 인·허가 등을 신청하 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는 제1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혁신금 융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거쳐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요청

 을 한 경우
- 2. 제11항에 따라 지체 없이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않는 경우

<신 설>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① ~ ③ (생 략)

④ 제10조에 따라 지정기간의 연장이 있는 경우 당초의 지정 기간을 기준으로 한 최종보고 서는 중간보고서로 대체하며, 연장 결정 시에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그 연장된 기간에 대 해서도 제2항에 따른 중간보고

③ 혁신금융사업자는 제7항어	
따라 금융관련법령의 정비(제	9
항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련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 정비를 한 경우를	1
포함한다)가 완료되어 시행된]
날(인·허가 등을 신청한 경우)_
인ㆍ허가 등에 대한 결과를 통	=
보받은 날)부터 혁신금융사업]
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 ㅇ]
경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	<u>}</u> -
<u>다.</u>	

④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지정기간의 연장 및 금융관련법령의 정비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제18조(혁신금융사업자의 의무)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제10조제1항-----

서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 ⑥ (생략)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4. (생략)
- 5항에 따른 보고의무를 이행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6. 제18조제6항을 위반한 자
- 7. ~ 11. (생 략)
- ③ (생략)

<u>⑤</u> 제1	0조제11항	·에 따i	라 지정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혁신금
	자는 제2형		
보고서	와 최종보	고서를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⑦ (현행 제5항 및 제6항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과 같음)

- 1. ~ 4. (현행과 같음)
- 5. 제18조제2항, 제4항 또는 제 5. ----- 제4항부터 제6 항까지의 규정-----

- 6. 제18조제7항-----
- 7. ~ 11. (현행과 같음)
- ③ (현행과 같음)